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제41조 관련)

1. 안전관리자의 자격

구 분	자 격
종합테마파크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1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사람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2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사람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일반테마파크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1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사람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2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사람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라.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검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 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 1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1명 이상
- 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11종 이상 2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2명 이상
- 다.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21종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 3명 이상

3. 안전관리자의 임무

-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테마파크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나.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해야 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테마파크시설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 다. 테마파크시설의 운전자 및 테마파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한다.